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2. 18 선고 2019나110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B

변 론 종결 2020. 1. 21.

판결 선고 2020. 2. 18.

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가단9088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2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27.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제1심에서 33,670,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,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32,100,000원으로 감축함과 아울러

자연손해금을 2017. 7. 27.부터 구하여 자연손해금부분을 확장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, 2, 3, 갑 제2, 3, 5, 6, 9, 10, 11, 12, 13호증, 갑 제4호증의 1, 2, 3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

- 1) D(개명 전 성명 : E)은 2011. 3. 9.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,140만 원, 근저당권자 피고, 채무자 D으로 정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- 2) 피고는 2011. 3. 10.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D에게 3억 7,800만 원을 대여하는 대출거래약정(이하 '이 사건 대출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(이 사건 대출약정에 터잡은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인데, 이하 '이 사건 피담보채무'라고 한다).

나. 원고의 권리행사 경위

- 1) 원고는 2016. 6. 8. D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15165호로 대여금 및 이자 합계 8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7. 22. 'D은 원고에게 83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. 8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,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. 8. 20. 확정되었다.
- 2) 원고는 2016. 9. 9. D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

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, 2016. 9. 12.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.

3) 원고는 2016. 10. 1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326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,900,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, 2016. 11. 18. 위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.

4)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9166호로 2,53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7. 7. 16. 제1의 나.1)항의 이행권고결정에 터 잡은 금액을 제외한 후 'D은 원고에게 2,000만 원을 지급하되, 2017. 7. 31.부터 2021. 8. 31.까지 50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4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'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,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7. 8. 11.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

1) 피고는 2017. 3. 28.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 1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, 2017. 3. 29.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.

2) 위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고 한다).

라.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

1) 피고는 '원금 3억 7,300만 원, 이자 54,700,664원, 집행비용 1,198,790원, 기타부대채권 23,450원 등 총 원리금 428,922,904원'인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관한 '2017.6. 22.자 채권계산서'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7. 7. 14.경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.

3) 이 사건 부동산은 2017. 6. 13. 매각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.

4)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. 7. 21. 실제 배당할 금액 386,107,980원

전부를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.

바. 원고의 배당이의 소 제기

- 1) 원고는 2017. 7. 21.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9,019,178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,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386,107,980원 중 위 9,019,178원을 제외한 나머지 377,088,802원을 지급하였다.
- 2) 원고는 2017. 7. 27.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148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.
- 3)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. 1. 25. '1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,107,980원 중 9,019,178원을 초과하는 배당액 부분은 각하하고, 2 9,019,178원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8. 2. 13. 확정되었다.

2.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- 1) D에 대한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대여원리금 채권의 약정이자율이 연 7%임에도 연 19%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실제 배당받아야 할 돈보다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더 배당받아 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였고,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- 2) D이 2011. 3. 10. 피고에 이 사건 피담보채무 원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 원금은 3억 7,3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4억 8,640만 원(= 4억 9,140만 원 - 500만 원)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효되었으니,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을 상실하였다.

나.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,107,980원 중 9,019,178원 부분에 관한 판단

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.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,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,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,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(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다3501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서 본다.

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9,019,178원에 대하여 이의함과 아울러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, 서울북부지방법원은 '1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,107,980원 중 9,019,178원을 초과하는 배당액 부분은 각하하고, 2 9,019,178원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'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8. 2. 13.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9,019,178원 부분의 기판력은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작용하여 위 원고패소의 본안판결인 9,019,178원 부분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, 9,019,178원 부분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.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다.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6,107,980원 중 9,019,17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

1)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

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① D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대출약정을 체결하고,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, 여기에다가 갑 제1호증의 3, 갑 제2, 5호증, 을 제1, 2, 5,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, ②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약정이자율은 연 7.6%,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9.6%인 사실, ③ D이 이 사건 대출원금 중 500만 원만을

변제한 사실, ④ D은 이 사건 나머지 대출원금 3억 7,300만 원에 대하여 2016년 7월분까지는 약정이자율연 7.6%에 따른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왔으나, 그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그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, ⑤ 피고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위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19.6%를 적용하여 계산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을 위 배당절차에서 신고한 사실, 6 2017. 7. 21.자 기준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 총 원리금은 427,700,664원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배당 가능 금액 386,107,980원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,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2)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

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,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(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),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48567 판결 참조). D이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도 없고,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경매절차진행 전에 실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.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,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경매절차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역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우연, 판사 정우석, 판사 김성래